

안산시의회 교육복지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2299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2. 8. 17.
발 의 자 : 김동수·김철진·나정숙·
박은경·이민근·정진교·
황효진 의원(7인)

1. 주 문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「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 교육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을 강구함으로써 선진교육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「안산시의회 교육복지 추진 특별위원회」를 구성한다.
- 나. 위원수는 7인 이내로 하며, 활동기간은 2012. 09. 03. ~ 2013. 04. 30일까지로 한다.
- 다.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.

2. 제안이유

- 급격한 사회변화에서 비롯되는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, 빈곤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, 부족한 교육 기자재 확보 등의 교육문제를 안산시 지역사회의 특수성과 생활양식에 맞는 방식으로 정비하는 등 교육선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.
- 또한, 교육현장에서는 혁신학교와 교육공동체 활동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도전이 시도되고 있어

우리시 역시 새로운 교육지원 정책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음.

- 이에 안산시의회는 관내 학교에 대한 지원정책을 점검하고, 새로운 정책을 강구함으로써 우리시가 교육선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「안산시의회 교육복지 추진 특별위원회」 구성·운영 하고자 하는 것임.

3. 관련법규

- 헌법 제31조
- 지방자치법 제56조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
-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

○ 헌법

-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-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.
-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.
- ④ 교육의 자주성·전문성·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.
-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.
-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,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

○ 지방자치법

- 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○ 지방자치법시행령

- 제56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○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